|  |  |  |
| --- | --- | --- |
| **기한경과 증치세공제증빙 공제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2011년 9월 14일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1년 제50호로 공표되어, 2017년 10월 13일 <증치세•소비세 관련 세무사항 처리절차 진일보 개선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에 의해 개정.)납세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2007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었고 규정된 기한 내에 인증 또는 비교대조검사 수속이 이뤄지지 아니한(이하 "기한경과"로 약칭) 증치세공제증빙의 공제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1. 증치세 일반납세자가 실제 거래 발생 후 객관적 원인으로 인해 규정된 기한 내에 증치세공제증빙(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 세관수입증치세전용납부서 및 자동차판매통일세금계산서 포함)"의 인증, 확인 또는 비교대조검사 수속을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할 세무기관이 검토한 후 상급 기관을 거쳐 성(省) 국세국에 보고하여 인증 및 비교대조검사를 받은 경우 비교대조를 통과한 증치세공제증빙에 대해 납세자가 계속해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증치세 일반납세자가 이 공고 제2조에 규정된 원인을 제외한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증치세공제증빙 공제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증치세공제증빙 공제기한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2. 객관적 원인에는 다음 각 호의 유형이 포함된다.(1) 자연재해, 사회돌발사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증치세납세증빙 공제기한을 넘긴 경우;(2) 증치세납세증빙을 도난•강탈당했거나 우송 과정에서 분실 또는 잘못 배달되어 공제기한을 넘긴 경우;(3) 관련 사법기관•행정기관이 업무처리 또는 검사 과정에서 증치세공제증빙을 압류함으로써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되었거나 세무기관의 정보시스템•인터넷 고장으로 납세자의 온라인 인증 데이터를 제때에 처리할 수 없게 됨으로써 증치세공제증빙 공제기한을 넘긴 경우;(4) 매매 당사자간의 경제 분쟁으로 인해 증치세공제증빙이 제때에 전달되지 못하였거나 납세자가 납세지를 변경하면서 기존 계좌를 말소하고 세무등기 수속을 다시 이행하는데 긴 기간이 소요되어 증치세공제증빙 공제기한을 넘긴 경우;(5) 기업 세무담당인력의 사망, 위급•중대 질환 발병 또는 무단사퇴로 인수인계 수속이 이뤄지지 않음으로 인해 증치세공제증빙 공제기한을 넘긴 경우;(6)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 기타의 경우.3. 증치세 일반납세자가 객관적 원인으로 인하여 증치세공제증빙 공제기한을 넘긴 경우 이 공고에 첨부된 <기한경과 증치세공제증빙 공제 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기한경과 공제 수속을 신청할 수 있다.4. 이 공고는 2011년 10월 1일부터 집행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첨부 : 기한경과 증치세공제증빙 공제 관리방법2011년 9월 14일첨부 :기한경과 증치세공제증빙 공제 관리방법1. 증치세 일반납세자가 실제 거래 발생 후 객관적 원인으로 인하여 증치세납세증빙 공제기한을 넘긴 경우 관할 세무기관에 기한경과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2. 기한경과 공제를 신청하는 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기한경과 증치세납세증빙 공제 신청서>;(2) 증치세공제증빙 기한경과 상황에 대한 설명. 납세자는 기한 내에 인증, 확인 또는 비교대조검사 수속을 이행하지 못한 원인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야 하며 기업의 공인을 날인해야 한다. 그 중에서, 제3자와 무관한 객관적 원인에 대해 납세자가 상세하게 설명해야 하는 사항 : 자연재해, 사회돌발사건 등 불가항력적 원인의 경우 납세자는 자연재해 또는 사회돌발사건 발생시간, 영향지역, 납세자의 생산경영에 실제로 미쳐진 영향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납세지를 변경하면서 기존 계좌를 말소하고 세무등기 수속을 다시 이행하는데 긴 기간이 소요되어 증치세공제증빙 공제기한을 넘긴 경우 납세자는 이전 수속 이행시간, 기존 계좌 말소시간 및 신규 계좌 등록시간, 전출지 및 전입지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기업 세무담당인력의 무단사퇴로 인수인계 수속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 납세자는 사건 경과, 세무담당인력의 성명, 사퇴시간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근로관계해지계약서 및 기업 내부의 관련 처리결정을 제출하여야 한다.(3) 객관적 원인이 제3자와 연관된 경우 제3자가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업 세무담당인력의 사망 또는 위급•중대 질환 발병의 경우 공안기관•교통관리부서 또는 병원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법기관•행정기관이 업무처리 또는 검사 과정에서 증치세공제증빙을 압류함으로써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사법기관•행정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증치세납세증빙을 도난•강탈당한 경우 공안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매매 당사자간의 경제 분쟁으로 인해 증치세공제증빙이 제때에 전달되지 못한 겨우 매도인이 발행한 상황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우송 과정에서 분실 또는 잘못 배달되어 증치세공제증빙 공제기한을 넘긴 경우 우정(郵政)업체가 발행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4) 기한경과 증치세공제증빙 전자정보;(5) 기한경과 증치세공제증빙 복사본(복사본은 반드시 정결하고 뚜렷해야 하며 증빙 비고란에 "원본과 일치함"을 기재하고 기업의 공인을 날인해야 함.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 복사본은 반드시 원본과 같은 크기로 오려내야 함.) 3. 세무기관의 원인으로 인해 납세자가 증치세공제증빙 공제기한을 넘긴 경우 관할 세무기관은 상신서류에서 관련 상황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 세무기관의 정보시스템•인터넷 고장으로 납세자의 온라인 인증 데이터를 제때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기관은 정보시스템 또는 인터넷 고장 발생시간과 지속시간, 고장 발생원인 및 표현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4. 관할 세무기관은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가 완비되었는지 여부, 거래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여부, 증치세공제증빙 기한경과 원인이 객관적 원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제3자가 발생한 증명서 또는 설명서에 기재된 시간이 논리성이 있는지 여부, 자료의 정보가 일치한지 여부, 증치세공제증빙 복사본과 원본이 일치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관할 세무기관은 오류가 없음을 확인한 후 상급 세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중치세공제증빙 기한경과 상황에 대한 설명서, 제3자가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설명서, 기한경과 증치세공제증빙 전자정보, 기한경과 증치세공제증빙 복사본을 상급 기관을 거쳐 성(省) 국세국에 상신하여야 한다. 5. 성(省) 국세국은 하급 기관이 상신한 서류를 심사하고 기한경과 증치세공제증빙 정보에 대한 인증, 비교대조검사를 실시한다. 서류가 조건에 부합하고 비교대조검사 결과가 일치한 경우 납세자가 기한경과 증치세공제증빙에 기재되었거나 계산된 세액을 계속 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6. 관할 세무기관은 정기 또는 비정적으로 기한경과 증치세공제증빙의 매입세액을 공제한 납세자에 대하여 재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조작된 정보를 제출하였거나 허위•조작 행위를 행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납세자에게 이미 공제처리한 매입세액을 전출처리하도록 명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별표 :1. [기한경과 증치세공제증빙 공제 신청서](http://hd.chinatax.gov.cn/guoshui/action/ShowAppend.do?id=15546)2. [기한경과 증치세공제증빙 전자정보 양식](http://hd.chinatax.gov.cn/guoshui/action/ShowAppend.do?id=15547) |  | **国家税务总局关于逾期增值税扣税凭证抵扣问题的公告**（2011年9月14日国家税务总局公告2011年第50号公布，根据2017年10月13日《国家税务总局关于进一步优化增值税、消费税有关涉税事项办理程序的公告》修正）　　为保障纳税人合法权益，经国务院批准，现将2007年1月1日以后开具的增值税扣税凭证未能按照规定期限办理认证或者稽核比对（以下简称逾期）抵扣问题公告如下：　　一、增值税一般纳税人发生真实交易但由于客观原因造成增值税扣税凭证（包括增值税专用发票、海关进口增值税专用缴款书和机动车销售统一发票）未能按照规定期限办理认证、确认或者稽核比对的，经主管税务机关核实、逐级上报，由省国税局认证并稽核比对后，对比对相符的增值税扣税凭证，允许纳税人继续抵扣其进项税额。增值税一般纳税人由于除本公告第二条规定以外的其他原因造成增值税扣税凭证逾期的，仍应按照增值税扣税凭证抵扣期限有关规定执行。二、客观原因包括如下类型：　　（一）因自然灾害、社会突发事件等不可抗力因素造成增值税扣税凭证逾期；（二）增值税扣税凭证被盗、抢，或者因邮寄丢失、误递导致逾期；（三）有关司法、行政机关在办理业务或者检查中，扣押增值税扣税凭证，纳税人不能正常履行申报义务，或者税务机关信息系统、网络故障，未能及时处理纳税人网上认证数据等导致增值税扣税凭证逾期；　　（四）买卖双方因经济纠纷，未能及时传递增值税扣税凭证，或者纳税人变更纳税地点，注销旧户和重新办理税务登记的时间过长，导致增值税扣税凭证逾期；　　（五）由于企业办税人员伤亡、突发危重疾病或者擅自离职，未能办理交接手续，导致增值税扣税凭证逾期；　　（六）国家税务总局规定的其他情形。　　三、增值税一般纳税人因客观原因造成增值税扣税凭证逾期的，可按照本公告附件《逾期增值税扣税凭证抵扣管理办法》的规定，申请办理逾期抵扣手续。　　四、本公告自2011年10月1日起执行。　　特此公告。附件：逾期增值税扣税凭证抵扣管理办法二○一一年九月十四日附件：逾期增值税扣税凭证抵扣管理办法　　一、增值税一般纳税人发生真实交易但由于客观原因造成增值税扣税凭证逾期的，可向主管税务机关申请办理逾期抵扣。　　二、纳税人申请办理逾期抵扣时，应报送如下资料：　　（一）《逾期增值税扣税凭证抵扣申请单》；　　（二）增值税扣税凭证逾期情况说明。纳税人应详细说明未能按期办理认证、确认或者稽核比对的原因，并加盖企业公章。其中，对客观原因不涉及第三方的，纳税人应说明的情况具体为：发生自然灾害、社会突发事件等不可抗力原因的，纳税人应详细说明自然灾害或者社会突发事件发生的时间、影响地区、对纳税人生产经营的实际影响等；纳税人变更纳税地点，注销旧户和重新办理税务登记的时间过长，导致增值税扣税凭证逾期的，纳税人应详细说明办理搬迁时间、注销旧户和注册新户的时间、搬出及搬入地点等；企业办税人员擅自离职，未办理交接手续的，纳税人应详细说明事情经过、办税人员姓名、离职时间等，并提供解除劳动关系合同及企业内部相关处理决定。　　（三）客观原因涉及第三方的，应提供第三方证明或说明。具体为：企业办税人员伤亡或者突发危重疾病的，应提供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或者医院证明；有关司法、行政机关在办理业务或者检查中，扣押增值税扣税凭证，导致纳税人不能正常履行申报义务的，应提供相关司法、行政机关证明；增值税扣税凭证被盗、抢的，应提供公安机关证明；买卖双方因经济纠纷，未能及时传递增值税扣税凭证的，应提供卖方出具的情况说明；邮寄丢失或者误递导致增值税扣税凭证逾期的，应提供邮政单位出具的说明。　　（四）逾期增值税扣税凭证电子信息；　　（五）逾期增值税扣税凭证复印件（复印件必须整洁、清晰，在凭证备注栏注明“与原件一致”并加盖企业公章，增值税专用发票复印件必须裁剪成与原票大小一致）。　　三、由于税务机关自身原因造成纳税人增值税扣税凭证逾期的，主管税务机关应在上报文件中说明相关情况。具体为，税务机关信息系统或者网络故障，未能及时处理纳税人网上认证数据的，主管税务机关应详细说明信息系统或网络故障出现、持续的时间，故障原因及表现等。　　四、主管税务机关应认真核实纳税人所报资料，重点核查纳税人所报送资料是否齐全、交易是否真实发生、造成增值税扣税凭证逾期的原因是否属于客观原因、第三方证明或说明所述时间是否具有逻辑性、资料信息是否一致、增值税扣税凭证复印件与原件是否一致等。　　主管税务机关核实无误后，应向上级税务机关上报，并将增值税扣税凭证逾期情况说明、第三方证明或说明、逾期增值税扣税凭证电子信息、逾期增值税扣税凭证复印件逐级上报至省国税局。　　五、省国税局对上报的资料进行案头复核，并对逾期增值税扣税凭证信息进行认证、稽核比对，对资料符合条件、稽核比对结果相符的，允许纳税人继续抵扣逾期增值税扣税凭证上所注明或计算的税额。　　六、主管税务机关可定期或者不定期对已抵扣逾期增值税扣税凭证进项税额的纳税人进行复查，发现纳税人提供虚假信息，存在弄虚作假行为的，应责令纳税人将已抵扣进项税额转出，并按《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的有关规定进行处罚。 　　 附表：1. [逾期增值税扣税凭证抵扣申请单](http://hd.chinatax.gov.cn/guoshui/action/ShowAppend.do?id=15546)2. [逾期增值税扣税凭证电子信息格式](http://hd.chinatax.gov.cn/guoshui/action/ShowAppend.do?id=15547)　 　　 |